

수원지방법원 2022. 12. 21 선고 2020가단55041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현 담당변호사 최진용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11. 9.

판 결 선 고 2022. 12. 21.

주 문

1.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위적 청구취지 : C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2017. 12. 8.

체결된 증여계약을 5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예비적 청구취지 :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0/100 지분에 관하여 2020. 1.

15. 체결된 증여계약을 5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7. 8. 14. C에게 50,000,000원을 변제기 2017. 9. 20.로 정하여 대여하였다(이하 ‘이 사건 대여금 채권’이라 한다).

나. C은 2017. 12. 8. 배우자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 중 1/2 지분을 증여하였고, D이 2017. 12. 22.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원고는 D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9. 7. 2. C과 D 사이의 2017. 12. 8.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D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9. 7. 23. 확정되었다(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07106호, 2019가단554812호, 이하 ‘관련사건’이라 한다).

라. D은 2020. 1. 15.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9/10 지분을 증여하였고, 피고가 2020. 1. 20. 이 사건 부동산 중 9/1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마. 한편 E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20. 3. 25. 해지를 이유로 말소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가. 주위적 청구

C이 2017. 12. 8. 배우자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, 사해행위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상, 가액배상으로 전득자인 피고에 대하여 5,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.

나. 예비적 청구

1) D이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을 증여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9/10 지분을 증여한 것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,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9/10 지분을 증여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. 따라서 원고는 D에 대한 5,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D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가액배상으로 5,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.

2) 피고는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9/10 지분을 증여받았고,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,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,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

갑 제2,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관련사건에서 원고의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, 이는 D의 자백간주에 의한 것인 점, ② 이 사건에서 피고는 C의 무자력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다두고 있고, 그밖에 C이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을 증여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과 D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

가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

D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이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, 오히려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, D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용인시 기흥구 F 상가, 화성시 G 아파트 등 여러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.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나.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

D이 관련사건 판결에도 불구하고 C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9/10 지분을 증여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, 갑 제4,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D이 관련사건 소장 부분을 직접 또는 C을 통해 송달받았음에도 다투지 아니하여 관련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으나,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자녀인 피고 역시 원고와 C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및 관련사건 판결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, ② D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을 증여받아 그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왔고, 더 이상 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9/10 지분을 이전하게 된 점, ③ 피고는 D에게 매월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보내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보태었고,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9/10 지분을 증여받은 후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고 있는 점, ④ 원고는 피고와 D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9/10 지분을 증여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, 피고가 D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정운

<별지>

부동산의 표시

1. 경기도 화성시 전 1,481㎡.

2. 경기도 화성시 답 2,248㎡. 끝.

